

채용형 산학협력 중점교원 규정

제정 2013. 10. 10
제6차 개정 2022. 04.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인사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신분·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이하 ‘산학협력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산학협력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 연구, 창업·취업지원 활동 등 산학협력 영역을 위주로 수행하는 계약제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및 신규 임용) ① 산학협력교원은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별표1> 및 <별표2>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교원의 신규임용방법은 제1단계로 본 규정의 심사항목 및 심사양식에 따라 심사하며, 제2단계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③ 제1단계 심사위원의 임명과 관련하여서는 교원인사관리준칙 제4조(기초및연구실적심사위원의 임명)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제2단계 면접심사는 교원인사관리준칙 제3절 면접심사를 준용하여 심사한다.
 ④ 면접심사대상자는 고득점자 순에 따라 모집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재가를 받아 선발한다

제4조(직위) 산학협력교원의 직위는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3.11.18)

제5조(소속) 산학협력교원은 각 학과(부) 또는 산학협력단에 소속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기준) ① 산학협력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심사는 해당년도 3월 1일자 및 9월 1일자 기준으로 하며, 신규임용 시기 등으로 인하여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 기간 만료일로 본다.(개정 2018.03.01.)
 ② 산학협력교원의 업적은 <별표 8>에 의거하여 평가한다.(개정 2013.11.18)
 ③ 산학협력교원의 재계약에 필요한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으며, 기준점수에는 필수평가항목 점수와 선택평가 항목 점수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11.18., 2018.03.01.)

구분	소요년수 (심사대상기간)	업적총점	필수평가 항목	선택평가 항목
재계약 (2년)	2년	100점	학생 취업관련 활동 40점	①산학협력기부금 및 장학금 확보 10점 ②외부연구비 수주 50점

- ④ 삭제 (2013.11.18)
 - ⑤ 삭제 (2013.11.18)
 - ⑥ 삭제 (2013.11.18)
- (제목 개정 2013.11.18)

제6조의2(임기만료 통보) ①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산학협력교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과 재계약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한다.

②재계약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산학협력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의를 임명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조 신설 2013.11.18.) (개정 2018.03.01.)

제6조의3(재계약 심사 방법) ①산학협력교원의 재계약 여부는 동 규정 제6조 제3항의 기준점수를 충족하고, 소속 학과장 및 학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별표9)을 얻은 자 중에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14.07.30., 2018.03.01.)

②교원인사위원회는 소속 학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의견서(별표9-1)를 참고하여 교육관계법령 준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학사업무 준수 등을 산학협력 중점교원 재계약 심사평정표(별표10)에 따라 평가하며, 별표10의 심사평정표는 산학협력중점교원 재계약 심사평정 기준표(별표11)를 적용하여 평가한다.(개정 2018.03.01., 2018.05.17)

③교원인사위원회는 위원 9명이 별표10에 따라 각각 평정한 점수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기초로 심의를 진행하며, 재계약 대상자는 70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8.03.01.)

④총장은 해당 교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서 (별표7)를 작성한다.(개정 2018.03.01., 2022.04.20)

⑤재계약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 및 학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는 필요 시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11.18)

제7조(신규임용 심사항목) 산학협력교원 신규임용 지원자에 대한 필수 심사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심사 결과를 밀봉하여 제출하면 <별표3>에 **교무연구처장**이 합산 평균하여 작성한다.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개정 2022.04.20.)

1. 경력 및 자질 : 40점
2. 산학협력활동관련 실적 : 40점
3. 산학협력활동계획서 : 20점

제8조(경력 및 자질) ① 경력사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4> 양식에 따라서 평가한다.

1. 총 산업체 근무 기간
2. 모집 전공 관련 근무 기간
3. 산업체 직위/직책 및 근무 부서 경력
4. 학위관련 경력 및 잠재력

② 전항의 경력사항 중 산업체 경력은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 100%로 인정한다.

③ 경력사항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기준과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경력사항 평가에서 위원 전원이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 객관적인 의견서를 위원장이 작성한 후 위원전원이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산학협력활동 실적) 산학협력실적은 지원일 현재까지 최근 10년간의 실적에 대하여 <별표5>의 양식에 따라서 평가한다.

제10조(산학협력활동 계획서) ① 산학협력활동 계획서는 <별표6>과 같다.

② 산학협력활동 계획서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별표4>의 양식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 기준과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각 위원의 배점은 정수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 ① 산학협력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매 학기 6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책임시간을 감면 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교원의 겸직을 제한하며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제 규정에 따른다.

③ 산학협력교원은 교내 취업관련활동(2년에 본교 재학생 8명이상 직접 주관취업)을 위하여 **학생취업지원처**와 연계한 산학협력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3.11.18.)(개정 2018.03.01., 2022.04.20)

④산학협력교원은 연구, 보직, 학생지도 및 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03.01.)

제12조(처우) ① (삭제).

② 산학협력교원의 보수는 일반 전임교원 조교수 10호봉의 60%를 산학협력교원 1호봉의 보수로 적용하되 세부사항은 매 학년도 예산집행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8., 2018.03.01.)

제13조(승진) 삭제 (2013.11.18)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교원인사관리준칙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단, 교원인사규정 중 제11조의2(교원평가), 제25조의 2(휴직)와 교수연구년제, 교내연구비 및 학술연구활동지원장려금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48, 2013.10.10)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07, 2013.11.18)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27, 2014.07.30)

이 규정은 2014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56, 2015.06.08)

이 규정은 2015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08, 2018.03.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 제3항, 제6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2항의 재계약 기준점수, 재계약 심사방법 및 적격심사 기준점수와 보수는 2018년 3월 1일자 신규임용 교원 및 재계약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71, 2018.05.17)

이 규정은 2018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기준

직위(급)	학 력	경 력
조교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 2. 기초지방자치단체장 3.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의 국장급 이상 4.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임원 이상 5. 정부출연 및 기업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6. 금융기관 행장급 이상 7. 판사, 검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종사한 자 8.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대표 임원 이상 9. 전공분야와 관련있는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10. 기타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상기 기관에 근무한 경력
공통 (경력완 화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중 3년 범위 기준 완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박사학위 소지자 2. 경력중 2년범위 기준 완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소지자 <p>* 단, 경력완화 기준적용시 경력완화 적용사유 등 관련자료 첨부</p>

〈별표2〉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산업체구분	인 정 기 준
민간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기타 구체적인 산업체경력 인정기준은 교육부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따른다.

<별표3> (개정 2022.04.20.)

심사총괄표

대학

학과(전공)

연번	성명	경력 및 자질 (40점)	산학협력활동관련 실적(40점)	산학협력활동계획서 (20점)	합계 (100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20

교무연구처장:

(인)

<별표4>

경력 및 자질 / 산학협력활동 계획서 심사표(위원용)

대학		학과(전공)	
성명			

구분	세부항목	배점	점수
경력 및 자질 (40점)	총 산업체 근무 기간	10(1년당 0.5점)	
	모집 전공 관련 근무 기간	10(1년당 1점)	
	산업체 직위/직책 및 근무 부서 경력	10	
	학위관련 경력 및 잠재력	10	
	합 계		

- ▶ 평가의견: 탁월(32점~40점), 우수(24점~31점), 보통(16점~23점), 미흡(15점 이하)
▶ 적용기준 및 평가사유:

평가항목	배점	점수
산학협력 활동계획서	20	

- ▶ 평가의견: 탁월(16점~20점), 우수(12점~15점), 보통(8점~11점), 미흡(7점 이하)
▶ 적용기준 및 평가사유:

20 . . .

심사위원: (인)

<별표5-1> (개정 2015.06.08)

산학협력활동 실적 심사표(위원용)

대학		학과(전공)	
성명			

구분	세부항목	배점	항목별 점수	합계
산학협력 연구활동 (30점)	특허	국제등록 건당 10점, 국내등록 건당 5점		
	창업	건당 5점		
	기술이전	1,000만원당 2점		
	신기술, 신제품 인증	국제 건당 2점 국내 건당 1점		
	연구과제 수탁	국책과제 건당 3점 민간과제 건당 1점		
	관련 논문(저서)	국제저명 편당 5점 국외전문 편당 2.5점 국외일반 편당 1.5점 국내전문 편당 2.5점 국내일반 편당 1점		
산학협력 교육, 봉사활동 (10점)	관련 특강	건당 1점		
	기술경영지도, 창업지도, 기술자문	건당 1점		
총점(40점)				

※ 산학협력활동 실적은 40점을 만점으로 하며, 산학협력 교육+봉사활동 실적은 10점을 초과 할 수 없음

20 . . .

심사위원 : (인)

〈별표5-2〉

연구실적물 세부평가내역 및 인정범위

구 분		가중치	인 정 범 위
저서	국제학술저서	5	외국어로 출판된 전공분야 학술저서
	국내 전문서적	2.5	다수가 다수의 항목을 묶은 책이 아니고 소수의 저자가 전문적 항목을 심도있게 저술한 책으로 대학원 등 전공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사용하는 서적
논문	국제 저명학술지	5	A&HCI, SSCI, SCI, SCI-E에 등재된 학술지
	국내 전문학술지	2.5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외 전문학술지	2.5	국제저명학술지 이외의 국외전문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국외 일반학술지	1.5	외국의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발간된 학술지
	국내 일반학술지	1	국내 전문학술지에 미선정된 학술지 (대학 및 연구소에서 발간된 학술지는 제외)

▶ 연구실적물 인정환산 점수

연구자수 (저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책임	공동	책임	공동	책임	공동	책임	공동	책임	공동	책임	공동
국제저명	5	-	3.5	3	2.50	2	2	1.5	1.75	1.25	1.50	1.00
국외전문	2.5	-	1.75	1.5	1.25	1	1	0.75	0.88	0.63	0.75	0.50
국외일반	1.5	-	1.05	0.9	0.75	0.6	0.6	0.45	0.53	0.38	0.45	0.30
국내전문	2.5	-	1.75	1.5	1.25	1	1	0.75	0.88	0.63	0.75	0.50
국내일반	1	-	0.7	0.6	0.50	0.4	0.4	0.3	0.35	0.25	0.30	0.20

▶ 연구과제 수탁 인정환산 점수

연구자수	1인		2~3인		4~5인		6인이상	
	책임	공동	책임	공동	책임	공동	책임	공동
국책과제	3	-	2.1	1.8	1.5	1.2	0.9	0.6
민간과제	1	-	0.7	0.6	0.5	0.4	0.3	0.2

* 별표7 이외 항목의 인정환산 점수가 발생할 경우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

<별표6>

산학협력활동계획서(지원자용)

대학		학과(전공)	
성명			

구분	내 용
산학협력 연구활동 (과제수탁 등)	
산학협력 교육활동	
산학협력 봉사활동 (취업 등)	

<별표 7> (신설 2013.11.18.)(개정 2018.03.01., 2022.04.20.)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계약서

상지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산학협력중점교원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 중점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아래사항에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기본사항

- 가. 직무구분 : 산학협력중점교원
- 나. 직 위 : 조교수
- 다. 계약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라. 근무부서 : (000대학 000학과(부)), 산학협력단 0000부

2. 처 우

- 가. “을”의 급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규임용시 1호봉부터 시작한다.
- 나. “을”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 계약이 될 경우 이 기간을 경력에 포함한다.

3. 복무조건

- 가. “을”은 계약기간 중 상지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을 존중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교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 나. “을”이 관계 법령,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및 상지대학교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교원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다. “을”은 교내 취업관련활동 및 산학협력 사업이 주업무가 되며, 책임강의시수는 매 학기 주당 6시간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책임시간을 감면 할 수 있다.
- 라. “을”은 교내 취업관련활동(2년에 본교 재학생 8명이상을 직접 주관취업)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학생취업지원처** 등 유관부서 및 학과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마. “을”은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본교 산학협력단 및 특성화사업단의 요청시 책임 강의시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산학협력성과를 내어야 한다.

4. 재임용 계약

- 가. “을”은 계약기간중 재계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동일 직위로 “갑”과 재계약 할 수 있다.
- 나. “갑”은 “을”의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과 재계약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한다.
- 다. “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심의를 “갑”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내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
 라. 임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시 재심사를 실시한다.
 마. “갑”은 “을”의 계약기간내 업적에 대하여 산학협력 중점교원 업적평가기준(산학협력 중점교원 규정 별표8)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바. “갑”은 “을”에 대하여 학과장 및 학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산학협력 중점교원 임용규정 별표9)에 따라 다음의 필수평가항목 점수를 충족하고, 선택평가항목 점수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교원인사위원회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계약한다.

구 분	소요년수 (심사대상기간)	업적총점	필수평가항목	선택평가항목
재계약(2년)	2년	100점	학생 취업관련 활동 40점	① 산학협력기부금 및 장학금 확보 : 10점 ② 외부연구비 수주 : 50점

사. 재계약 절차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산학협력 중점교원 규정에 따른다.
 아. “을”은 재계약시 “산학협력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기 타

가. “을”의 임용근거가 되는 각종 증명서 및 실적물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을”이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학기 시작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도중에는 사임할 수 없다.
 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교원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라.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과 “을”은 상기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0 . . .

“갑” 상지대학교 총장 (직인) “을” 성 명 : (인)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우산동)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표 8〉 (신설 2013.11.18)

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평가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비 고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점수	
산학 협력 교육 · 봉 사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도	건당	1점	상한 20점
		취업연계 건당	2점	
	캡스톤 디자인 지도	건당	5점	
	산업체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건당	5점	
	산업연계 전공교과목 개발/운영	건당	5점	
	특허/지적재산권 관련 교육	건당	5점	
	교외 산업체관련 활동	과제활동 건당	2점	
		기술·경영 자문 건당	5점	
		산업체 특강	3점	
	교내 취업관련 활동	수요조사 건당	0.1점	상한 5점
		상담 건당	0.1점	상한 10점
		특강 건당	2점	상한 10점
		학생 취업추천서	1점	상한 10점
		학생 취업확정 - 건강보험DB등재1명당	5점	
산학 협력 연구	산학협력 기부금 및 장학금 확보	백만원	1점	상한 20점
	외부 연구비 수주	백만원	1점	상한 100점
	특허	국제등록 건당	20점	
		국제출원 건당	5점	
		국내등록 건당	10점	
		국내출원 건당	2점	
	논문	SCI급 편당 (SCI, SSCI, SCIE, A&HCI)	20점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이상 편당	5점	상한 20점

- 업적평가기간은 계약임용기간으로 한다.
- 업적성과물의 인정비율 기준
 - 인정비율 기준 : 논문 및 연구비수주가 공동(N)인 경우 ①책임자 = 2/(N+1), ②참여자 = 1/(N+1) 그 외 연구실적 및 활동이 공동(N)인 경우 1/N

〈별표9-1〉 (신설 2018.03.01.)

산학협력 중점교원 재계약 심사 의견서

대상자	소속 :	계약기간	학장(인) 산학협력단장(인)
	직급 :		
	성명 :	. . 까지	
영역	구분	항목	의견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가.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격	
		나. 인간관계의 원만성	

〈별표 10〉 (신설 2013.11.18.)

산학협력 중점교원 재계약 심사평정표

대상자	소속 :	평정기간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확인 (인)														
	직급 :							. 부터									
	성명 :		. 까지														
구분 평정영역 (점수)	평정항목	실적 및 의견	평정														
			수 (10)	우 (8)	미 (6)	양 (4)	가 (2)										
1. 교수로서의 기본적자질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나. 인간관계의 원만성																
2. 출근상황 및 근무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수 (5)	우 (4)	미 (3)	양 (2)	가 (1)										
3. 강의평가	평정기간내 평균점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10</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r> <td>90점 이상</td> <td>80점 이상</td> <td>70점 이상</td> <td>60점 이상</td> <td>60점 미만</td> </tr> </table>	10	8	6	4	2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수 (10)	우 (8)	미 (6)	양 (4)	가 (2)
		10	8	6	4	2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4. 교내취업 관련활동	재학생 취업추천실적		수 (10)	우 (8)	미 (6)	양 (4)	가 (2)										
	재학생 취업확정 -. 건강보험DB등재자 기준		수 (15)	우 (12)	미 (9)	양 (6)	가 (3)										
5. 산학협력 연구활동	산학협력활동계획서 이행		수 (10)	우 (8)	미 (6)	양 (4)	가 (2)										
6. 법규준수 및 품위유지	가. 교육관계법령 준수		수 (15)	우 (12)	미 (9)	양 (6)	가 (3)										
	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합 계		평정총 계(100점)	점														

〈별표 11〉 (신설 2018.05.17.)

산학협력중점교원 재계약 심사평정 기준표

구분 평정영역	평정항목	배점	심사평정 참고자료 및 배점기준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10 (5+5)	1. 소속대학장 심사의견서 가항 : 5점 (매우우수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매우미흡:1) 2. 교원인사위원 배점 : 5점 - 추천서 등 검토 (매우우수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매우미흡:1)																				
	나. 인간관계의 원만성	10 (5+5)	1. 대학장 심사의견서 나항 : 5점 (매우우수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매우미흡:1) 2. 교원인사위원 배점 : 5점 - 추천서 등 검토 (매우우수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매우미흡:1)																				
2. 출근상황 및 근무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5	1. 수업현황(학부, 대학원 포함) - 5 : 주2.7일 이상근무, 책임시수 완료 - 4 : 주2.7일 이상근무, 책임시수 주1시간 이내 부족 - 3 : 주2.7일 이상근무, 책임시수 주2시간 이내 부족 - 2 : 주2.7일 미만 근무, 책임시수 주2시간 초과부족																				
3. 강의평가	평정기간 내 평균점수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 5px;">10</td> <td style="padding: 2px 5px;">8</td> <td style="padding: 2px 5px;">6</td> <td style="padding: 2px 5px;">4</td> <td style="padding: 2px 5px;">2</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90점 이상</td> <td style="padding: 2px 5px;">80점 이상</td> <td style="padding: 2px 5px;">70점 이상</td> <td style="padding: 2px 5px;">60점 이상</td> <td style="padding: 2px 5px;">60점 미만</td> </tr> </table>	10	8	6	4	2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10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 5px;">10</td> <td style="padding: 2px 5px;">8</td> <td style="padding: 2px 5px;">6</td> <td style="padding: 2px 5px;">4</td> <td style="padding: 2px 5px;">2</td> </tr> <tr> <td style="padding: 2px 5px;">90점이상</td> <td style="padding: 2px 5px;">80점이상</td> <td style="padding: 2px 5px;">70점이상</td> <td style="padding: 2px 5px;">60점이상</td> <td style="padding: 2px 5px;">60점미만</td> </tr> </table>	10	8	6	4	2	90점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60점미만
10	8	6	4	2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10	8	6	4	2																			
90점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60점미만																			
4. 교내취업 관련활동	재학생 취업추진 실적	10	1. 취득점수 = 학생 취업추천서 건수 × 1점																				
	재학생 취업확정 - 건강보험 DB 등재자 기준	15	1. 취득점수 = 취업확정인원수 × 1.875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근접한 상위 점수 부여) ※계약서에 8명이상 학생취업인원이 명시됨																				

구분 평정영역	평정항목	배점	심사평정 참고자료 및 배점기준
5. 산학협력 연구활동	산학협력활동계획서 이행	10 (5+5)	1. 산학중점교원 업적평가 이행실적 점수 - 5 : 100점(취업활동 40점 이상) - 4 : 90점 이상(취업활동 40점 미만) - 3 : 80점 이상(취업활동 40점 미만) - 2 : 70점 이상(취업활동 40점 미만) - 1 : 70점 미만(취업활동 40점 미만) 2. 교원인사위원회배점 : 5점
6. 법규준수 및 품위유지	가. 교육관계 법령 준수	15 (5+10)	1. 상벌현황(총장이상, 장관이상) - 5 : 포상 1회 이상, 징계 무 - 4 : 포상 무, 징계 무 - 3 : 경징계 1회 - 2 : 경징계 2회 이상 - 1 : 중징계 1회 이상 2. 수사상황은 - 벌금형은 경징계 1건으로, - 벌금형 초과는 중징계 1건으로 환산 3. 교원인사위원회 배점 : 10점
	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15	1. 가항의 기준에 의거 배점하고 2. 학장 심사의견서, 추천서 등 참고하여 교원인사위원회 배점 : 15점
합 계		100	

※ 각 평정항목별 현황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사기준일 현재 자료로 평정한다.